

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8년 12월 26일 규칙 제84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) ① 「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하여 산정한다.

1. 반제품 건물번호판 구입단가
2. 제1호 외의 완제품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반제품 건물번호판 구입단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조달청 조달단가를 적용한다.

제3조(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) 시장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, 산출 근거 등을 시보, 시 홈페이지, 오산시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